

서울특별시 「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」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267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(강서·양천·구로·금천구)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,
- 나.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에 2개 센터(양천구 신월동, 구로구 고척동 소재)를 운영하고 있음.
- 다. 이 중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서남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(3개분소 포함)가 금년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- 라. 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센터 운영현황

구 분	서남권 센터				고척동 센터
	신월동본소(총괄)	강서분소	구로분소	금천분소	
위 치	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	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	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(아)상가동 116호	금천구 벚꽃로60 라이프(아)상가동 2층 102호	구로구 고척로 51나길 25
사무실 면적	231.4㎡ (사무실, 상담실, 홍보관으로 구성)	48㎡ (사무실, 민원상담실로 구성)	18.8㎡ (사무실, 민원상담실로 구성)	46.9㎡ (사무실, 민원상담실로 구성)	52㎡ (사무실, 민원상담실로 구성)
수탁기관	(사)항공기소음				(사)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
위탁기간	'19.1.1.~'21.12.31. (최초 : '16.11.18~'18.12.31)	'20.8.25.~'21.12.31.			'20.9.1~'22.12.31
인 력	센터장1, 사무국장1, 연구원1, 민원상담1	분소장1, 사무지원1	분소장1, 사무지원1	분소장1, 사무지원1	센터장1, 사무지원1
연소요예산	448백만원	139백만원	139백만원	139백만원	165백만원
비 고	재위탁 동의 대상				

나. 주요 추진사업(최근3년, '19년 ~ '21년 6월)

○ 항공기 소음에 관한 민원 및 피해에 대한 상담

- 대상지역내 홍보를 통하여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('21년 6월 기준 9,183건 민원접수)
- 내용에 따라 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
- 양천,강서,구로,금천 등 지역에 『찾아가는 공항소음 안내』 사업 ('19년 59회 운영, '20년 코로나19로 취소, '21년 상반기 12회 운영)

<민원 접수 및 상담·안내 현황>

민원 내용	2019	2020	2021(6월)	합계
합계	5,129	2,533	1,521	9,183
전기로 신청 접수 및 문의	1,829	1,199	165	3,193
냉방시설 신청 및 유지보수	1,124	695	458	2,277
방음시설 신청 및 유지보수	357	142	125	624
대책지역 포함 여부	556	175	334	1,065
TV수신료 신청 접수	11	9	6	26
항공기소음 불만 및 측정요구	917	94	242	1,253
대책사업 불만 및 제안	37	115	127	279
기타	298	104	64	466

○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추진 (55개소)

- 양천구 등 소음대책지역(75웨클 이상)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 소음측정 지원하여 소음지도 이상유무 확인 및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내용 전달
 - '19년(41개소) : 소음측정 요청지 28개소 및 실내소음 13개소 측정
 - '20년 :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사업 미추진
 - '21년 6월(14개소) : 소음측정 요청지 14개소 측정

○ 공항소음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(6건)

- 공항소음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공항소음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

연도	구분	내용	건수
2019년	토론회	방음시설 사업 개선 토론회 공항소음 학습권 침해 및 대책방안 토론회	2건
	조사·연구	일본 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처 조사 및 자료 발간	1건
	정책개발 및 제도개선	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 공항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 (2021년부터 법률 시행)	1건
2020년	토론회	코로나19로 취소	-
	조사·연구	독일의 항공기소음 관련법 조사 및 자료 발간	1건
	정책개발 및 제도개선	공항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사업 개선을 위한 청원	1건

○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추진

- 캠페인 일환으로 『공항길 걷기대회』 대회 추진 ('19년, 1,000명 참가)
- 공항소음 그림·사진·UCC공모전 진행 ('20년 797건 접수)
- 공항소음 아카데미 진행 ('19년 132명 참가)
- 공항소음 자료실 및 공항소음지도 서비스 운영
-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
-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 지원 소식지 발행 (5회) 및 배포



○ 피해지역민과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

- 사업보고회 개최 : 2회 ('19년 12월, '20년 12월-온라인)
-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개최 : 4회
- 공항소음 활동가 및 단체의 참여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(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, 소음피해시민권리찾기운동,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등 참여)

○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

- 서울시, 자치구, 한국공항공사 등 민원처리, 정보교류 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 추진
-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중요 민원 등 각 기관별 민원처리 개선 및 추가 지원사항 등 협의 추진

다. 재위탁 추진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 (2022. 1. 1. ~ 2024. 12. 31.)

※ (근거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

○ 위탁사무 : 「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조례」 사무

-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
-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-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소요예산 : 연간 865백만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경쟁(재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신 규(공모) : '16.11.18.~'18.12.31 (사)항공기소음
 - 2차 재위탁(공모) : '19. 1. 1.~'21.12.31 (사)항공기소음

마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만사항,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사업 안내, 관련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·처리 및 정보제공 필요
- 해외사례 등의 조사·연구와 주민 자문위원회, 주민토론회, 사업보고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선사업(정책개선안 마련 및 법률개정 청원 등) 추진 필요
- 공항소음 피해 지역민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수년간의 누적된 불신이 있으므로,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공항소음 관련 활동을 해 온 지역기반 공항소음전문 활동 단체에서 사업 추진 필요
-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, 측정자격,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소음 전문단체에서 센터 운영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
 -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
-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('21.6)

※ 작성자 :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 권소진 (☎2133-4254)